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10. 20.(수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 원

형태근 위 원

양문석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- **1)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-** 한국노키아(주) 등 8개 법인 (2010-61-257)
 - o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의거, 8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.
 - o 심사결과 주요 내용
 - ① 적격 법인: 5개 법인
 - 한국노키아(주), 서울이동통신(주), (주)프라빈소프트, (사)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, (주)에넥스텔레콤
 - ※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고,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허가신청 법인을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
 - ② 부적격 법인 : 3개 법인
- 2)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(주)KT 등 3개 사업자
 - (2010-61-245~247)
 - o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(주)KT, (주)잉카인터넷, 에스케이 마케팅앤컴퍼니(주)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함.
 - o 사업자별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
 - ① (주)KT
 - 위반내용
 - ·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상품판매에 이용한 행위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로써 정보통신망법* 제24조를 위반
 - * 정보통신망법 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- 처분내용 : 과징금 10억원 및 시정명령
 - ② (주)잉카인터넷
 - 위반내용
 - ·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제1호를 위반

- ·권한 없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행위 및 회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 저장하지 않은 행위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위반
- ·만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
- 처분내용 : 과태료 5백만원 및 시정명령
- ③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(주)
 - 위반내용
 - ·개인정보 위탁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위반
 - 처분내용 : 엄중 '경고'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명함
- 3) 신규 라디오방송국(FM) 허가에 관한 건 (재)원음방송 등 2개사 (2010-61-258)
 -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46차 위원회('10. 7. 29)에서 의결이 보류된 (재)원음방송의 원음대구FM방송국 허가신청 건과 (재)CBS의 CBS부산음악 FM방송국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기로 의결함.
 - o 원음대구FM방송국·CBS부산음악FM방송국 허가 주요 내용
 - ① 출력은 1킬로와트로 하며, 허가 유효기간은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함.
 - ② 허가조건

< 허가 조건 >

- o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이행각서* 및 이행계획서**에서 약속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
- o 방송편성에서 보도를 제외할 것
- o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,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
- o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, 주파수 회수,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
- * 이행각서 주요 내용 : 이행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3년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
- **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 : 허가신청한 주된 방송분야의 60% 이상 편성계획, 광고판매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을 고려한 재원확보계획

- **4)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** SK텔링크(주)의 티유미디어(주) 합병 (2010-61-259)
 -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, 티유미디어(주)의 변경(법인합병)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기로 의결함.
 - o 합병 주요 내용
 - ① 기간통신사업 등을 행하는 SK텔링크(주)가 위성DMB사업을 행하는 티유미디어(주)를 흡수합병
 - ② 합병 이후, SK텔링크(주)가 위성DMB사업자로서 위성DMB 사업 운영
 - ③ 합병사유
 - 위성DMB사업의 재무적 위기 해소, 합병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, 최대주주인 SK텔레콤(주)의 책임 경영 강화
 - ④ 합병 전·후 주주구성 변동 사항

합병 전		합병 후	
법인명 (자본금)	주요 주주 (5% 이상)	법인명 (자본금)	주요 주주 (5% 이상)
SK텔링크(주) (52억원)	· SK텔레콤(주) : 90.77%	SK텔링크(주) (68억원)	· SK텔레콤(주) : 80.00%
티유미디어(주) (3,232억원)	· SK텔레콤(주) : 44.15% · 에코스타(美) : 8.25%		

⑤ 변경허가 조건

─ < 변경허가 조건 > ──

- o SK텔링크(주)는 편성권의 독립 등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변경허가 이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티유미디어(주)와 SK텔링크(주)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준하여 티유미디어(주) 고객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, 조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o SK텔링크(주)는 합병을 통해 추진 가능한 위성DMB 신규 사업계획을 변경허가 이후 6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o SK텔링크(주)는 방송사업과 통신 등 기타사업 간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사. 보고사항

1)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

- o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에 대한 보완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·운영 계획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- o 주요 내용
- ① 구성 및 운영
 - (구성) 방송정책국 주관 하에 관련 실국의 과장 및 외부 인사 등을 포함하여 총 8인으로 구성(필요시 추가 조정 가능)
 - ·방통위(6인) : 방송정책국장(단장), 방송정책기획과장, 지상파방송과장, 뉴미디어 정책과장, 방송운영총괄과장, 조사기획총괄과장
 - ·외부 인사(2인) : 방송학계,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
 - ※ 지상파방송측 및 케이블방송측이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씩을 포함
 - (운영) 10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(잠정적 '11. 1월말 까지)하며, 정기회의 개최 및 필요 시 단장이 임시회의를 소집
- ② 주요 논의사항
 - '10년도 정책 연구과제 및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무적 정비 사항을 논의
 -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및 분쟁 해결 방안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
 - ·재송신 제도개선을 위해 의무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의 범위 확대 여부, 재송신 관련 해외사례 및 의무제공 제도 등 도입 여부 등을 검토
 - ※ 방송법(제78조), IPTV법(제21조)에 따라 KBS1, EBS는 의무재송신하여야 하며, 나머지 지상파방송(KBS2, MBC, SBS)은 규정이 없어 사업자간 자율사항에 해당
 - ·분쟁 해결 절차 보완을 위해 조정적 중재 또는 직권 중재 등의 도입, 중재 권한 범위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방안을 검토
 - ※ 현행의 분쟁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, 쌍방 합의없이는 조정 불성립
 - ·정책·제도적 사항 중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·운용 제도 개선, SO-PP간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콘텐츠 보유·경쟁 확대 방안 등을 검토

2)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(안)에 관한 사항

- o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분석의 선행 단계로서 평가의 단위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시장획정 방안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- o 주요 내용
- ① 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
- ① 시장개요
 - 지상파방송사, SO 등의 방송플랫폼사업자가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시장
- ② 시장 획정방안
 - 1) 유료방송플랫폼 시장
 - 2)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 시장
 - 종합유선방송(아날로그, 디지털), 위성방송, IPTV는 동일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으로 획정
 -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은 아날로그 종합유선방송 중심의 전체 유료방송플랫폼 시장과 구분하여 별도 시장으로 획정
 - 유료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은 지역별 시장을 획정
- ② 방송채널 시장
 - ① 시장개요
 -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및 지역 지상파방송사 등이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자 에게 공급할 방송채널을 획득하는 시장
 - ② 시장 획정방안
 - 1) 지상파방송사(key station)와 지역 지상파방송사간 채널시장
 - 2)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시장
 - 3) 유료방송채널 시장(스포츠, 드라마, 영화는 세부시장획정)
 - 지상파방송사(key station)와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채널거래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해져 있어(지역MBC-MBC, 지역민방-SBS) 별도 시장으로 획정
 - ·지상파방송사는 방송구역이 정해져 있어 지역별 시장을 획정

- 시청자는 유료방송채널을 지상파방송채널의 대체재로 인식하지 않는 등 수요대체성이 높지 않아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은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과 별도 시장으로 획정
- ·지상파방송의 역외 재송신 승인 제도로 인해 지역별 시장을 획정
- 유료방송채널 중 영화, 스포츠, 드라마 등 특정 장르의 시청률이 높고, 시청자가 강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장르별 방송채널 시장을 획정
- ·유료 방송채널의 거래는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전국 시장으로 획정
- ③ 방송프로그램 시장
 - ① 시장개요
 -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채널에 편성하거나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방송프로그램을 획득하는 시장
 - ② 시장 획정방안
 - 1) 지상파방송용 방송프로그램 시장
 - 2) 유료방송채널용 방송프로그램 시장
 - 2-1) 유료방송채널용 지상파방송 재방영프로그램 시장
 - 지상파방송(key station)을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시청률 및 제작비를 고려할 때 유료방송채널용 방송프로그램과 수요 대체성이 낮아 별도 시장으로 획정
 - 유료방송채널에서 지상파 재방영프로그램은 시청률 및 재방영권의 대가를 고려할 때 수요 대체성이 낮아 별도 시장으로 획정
 - 방송프로그램은 전국적 차원에서 거래되고 있어 전국 시장으로 획정
- ④ 방송광고 시장
 - ① 시장개요
 - 지상파방송사, PP 등이 방송광고 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시장
 - ② 시장 획정방안
 - 1)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광고 시장
 - 2) 일반 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장
 - 지상파방송 3사(KBS2, MBC, SBS)의 방송광고 시장은 시청률 및 방송광고 가격을 고려할 때 PP 등 일반 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장과 별도 시장으로 획정

- 지상파방송사 및 유료방송채널의 방송광고는 전국시장으로 획정
- ·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지역광고, 유료방송플랫폼(SO)의 지역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장을 획정

아. 기 타

- 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 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. 10. 27(수),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.
- 6. 폐 회 (12:05)